|  |  |  |
| --- | --- | --- |
|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수입식품 수출입업체 비안 관리규정》 및** **《식품 수입기록과 판매기록** **관리규정》 발표에 관한** **공고**2012년 제55호수입식품의 안전 감독관리를 진일보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및 그 실시조례, 《국무원 식품 등 제품의 안전 감독관리에 관한 특별규정》과 《수출입 식품 안전 관리방법》 등 법률, 행정법규, 규장의 규정에 의거, 국가질량총국은 《수입식품 수출입업체 비안 관리규정》과 《식품 수입기록과 판매기록 관리규정》을 제정하는 바, 이에 비준발표한다.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1. 《수입식품 수출입업체 비안 관리규정》 2. 《식품 수입기록과 판매기록 관리규정》2012년 4월 5일 첨부1: **수입식품 수출입업체 비안 관리규정****제1장 총 칙****제1조** 수입식품 수출입업체 정보 및 수입식품 원산지와 유통을 파악하고 수입식품의 원산지 추적을 보장하며, 수입식품의 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수입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국무원 식품 등 제품안전 감독관리에 관한 특별규정》과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방법》 등 법률, 행정법규, 규장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은 중국 대륙 경내(홍콩, 마카오 불포함)에 식품을 수출하는 경외 수출업체 또는 대리업체 및 경내 수입식품의 수하인(이하 ‘수출입업체’로 통칭)의 비안관리에 적용한다. 본 규정의 첨부표에 열거된 경영식품 종류 이외의 제품, 즉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제품, 일부 곡류 품종, 일부 유자(油籽)류, 과일, 식용동물 등은 유관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조** 국가질검총국은 수입식품 수출입업체 비안의 감독관리 업무를 주관하며, 수입식품 수출입업체의 비안 관리시스템(이하 “비안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입식품 수출입업체 비안명단의 발표와 조정을 책임진다. 국가질검총국은 각 지역에 출입국 검험검역기구(이하 “검험검역기구”)를 설치하여 수입식품 수하인 비안신청 수리, 비안자료 정보 사정(审核), 식품 수입 시 수출입업체 비안정보 심사 등의 업무를 책임지도록 한다. **제2장 수출업체 또는 대리업체 비안****제4조**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수출업체 또는 대리업체는 국가질검총국에 비안을 신청해야 하며, 비안에 제공한 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수출업체 또는 대리업체는 비안 관리시스템을 통해 비안신청표(첨부1)을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며, 수출업체 또는 대리업체의 명칭, 소재국가 또는 지역, 주소, 연락인 성명, 전화, 경영식품 종류, 작성인 성명, 전화 등 정보를 제공하여 제출한 정보가 진실하고 유효함을 보장해야 한다. 수출업체 또는 대리업체는 긴급상황 발생 시 비안정보를 통해 유관 인원과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수출업체 또는 대리업체는 비안정보 제출 후, 비안 관리시스템에서 생성된 비안 일련번호와 조회번호를 받게 되며, 비안 일련번호와 조회번호에 근거하여 비안 진행경과 또는 비안정보 수정을 조회할 수 있다. **제6조** 수출업체 또는 대리업체의 주소, 전화 등에 변화가 생긴 경우, 즉시 비안 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정을 진행해야 한다. 비안 관리시스템은 수출업체 또는 대리업체가 제출한 정보 및 정보수정 정황을 보존한다. 수출업체 또는 대리업체의 명칭에 변화가 생긴 경우, 반드시 비안을 재신청 해야한다. **제7조** 국가질검총국은 완전하게 비안정보를 제공한 수출업체 또는 대리업체에 대해 비안한다. 비안 관리시스템에서 수출업체 또는 대리업체 비안명단을 생성하고, 국가질검총국 홈페이지에 공포한다. 공포명단의 정보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비안 수출업체 또는 대리업체 명칭 및 소개국가 또는 지역. **제3장 수입식품 수하인 비안****제8조** 수입식품 수하인(이하 “수하인”)은 그 공상등기등록지역의 검험검역기구에 비안을 신청하고 제출한 비안정보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9조** 수하인은 식품 수입 전, 소재지 검험검역기구에 비안을 신청해야 한다. 비안 신청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1) 정확하고 완벽하게 작성한 수하인 비안신청표 (2) 공상영업집조, 조직기구 대마증서, 법정대표인 신분증명, 대외무역경영자비안등기표 등의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을 같이 제출하여 대조 확인함. (3) 기업의 품질안전 관리제도 (4) 식품안전과 관련된 조직기구 설치, 부서 직능과 직위직책 (5) 경영할 식품종류, 보관 장소 (6) 2년 내, 이전에 식품의 수입, 가공, 판매에 종사한 경우, 관련 증명(식품품종, 수량)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7) 자가검역할 경우, 자가검역 단위 비안등기증명서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을 같이 제출하여 대조 확인함.검험검역기구는 기업이 제공한 정보를 사실대조 후 비안한다. **제10조** 수하인은 상술한 페이퍼 문건자료를 제출하는 동시에 비안 관리시스템을 통해 비안신청표(첨부2)를 작성하고 제출하고, 수하인의 명칭, 주소, 연락인 성명, 전화, 경영식품 종류, 작성인 성명, 전화 및 승낙서 등 정보를 제공한다. 수하인은 긴급상황 발생 시 비안정보를 통해 유관 인원과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수하인은 비안정보 제출 후, 비안 관리시스템에서 생성된 비안 일련번호와 조회번호를 받게 되며, 비안 일련번호와 조회번호에 근거하여 비안 진행경과 또는 비안정보 수정을 조회할 수 있다. **제11조** 수하인 명칭, 주소, 전화 등에 변화가 생긴 경우, 즉시 비안 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정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검험검역기구가 사실과 대조하고 동의한 후, 수정한다. 비안 관리시스템은 수하인이 제출한 정보 및 수정정보 정황을 보존한다. **제12조** 비안신청 자료가 완비된 경우, 검험검역기구는 이를 수리하고, 5일 업무일 내에 비안업무를 완료해야 한다. **제13조** 검험검역기구는 수하인의 비안자료 및 전자정보의 사실대조 후, 비안 일련번호를 배정한다. 비안 관리시스템에서 수하인 명단을 생성하고 국가질검총국 홈페이지에 이를 공포한다. 공포 명단의 정보는 다음을 포함한다: 비안 수하인 명칭, 소재지 직속 출입국 검험검역국 명칭 등 **제 4장 감독관리****제14조** 검험검역부문은 이미 비안을 취득한 수입식품 수출입업체 비안정보에 대하여 감독 및 검사를 시행한다. 각 지역의 검험검역기구는 수입식품의 정보조사를 위하여 수출업체 또는 대리업체의 비안정보를 비준하고, 검사 유관 증명자료 또는 현장조사에 대한 수하인이 제공하는 비안정보를 비준한다. 비안정보가 요구사항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수정하여 완전한 비안정보를 요구해야 한다. 요구에 따라 정보를 적시에 수정하거나, 완전하게 고치지 않은 경우, 유관 정보를 수출입 식품생산 경영기업 신용불량으로 기록한다. **제15조** 수입식품의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수입식품에 대한 검역신고 진행 시, 검역신고서에 수입식품 수출입업체의 명칭 및 비안 일련번호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검험검역기구는 비안 일련번호와 수입식품 수출입업체의 명칭 등 정보와 비안정보의 일치여부를 대조 심사하고, 비안을 받지 않았거나 비안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비안완료 또는 정정해야 하는 유관정보를 고지해야 한다. **제16조** (1) 수출업체 또는 대리업체가 비안신청 시, 허위 비안자료 및 정보를 제공한 경우, 비안을 승인을 할 수 없고, 이미 비안된 경우 비안 일련번호를 취소할 수 있다. 수출업체 또는 대리업체가 중국으로 수출한 식품이 전염병 또는 품질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신용기록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해당 수입식품의 검험검역을 강화한다. 기타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유관 법률 및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2) 수하인이 비안신청 시 허위 비안자료 및 정보를 제공한 경우 비안을 승인할 수 없고, 이미 비안된 경우, 비안 일련번호를 취소할 수 있다. 수하인이 비안 일련번호를 양도, 임대사용, 임의로 수정한 경우, 신용기록에 포함시켜 관리하며, 해당 수입식품의 검험검역을 강화한다. **제5장 부 칙****제17조** 본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1 : 수출업체 또는 대리업체 비안신청표(생략) 2 : 수하인 비안신청서(생략)첨부2 : **식품 수입기록 및 판매기록 관리규정****제1조** 수입식품 원산지와 유통을 파악하고, 수입식품의 원산지 추적을 명확히 보장하기 위하여 식품 수입기록 및 판매기록의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및 그 실시조례, 《국무원 식품 등 제품의 안전 감독관리에 관한 특별규정》, 《수출입식품 안전 관리방법》등 법률, 행정법규, 규장의 규정에 의거,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은 출입국 검험검역기구가 식품 수입기록 및 판매기록에 대한 감독관리 하는데 적용된다. 《수입식품 수출입업체 비안 관리규정》의 첨부 1에 나열된 경영식품 종류 이외의 제품, 즉,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제품, 일부 곡류 품종, 일부 유자(油籽)류, **과일, 식용동물 등은 유관 규정에 따라 이행한다.** **제3조** 식품 수입기록은 식품 및 유관 수입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 페이퍼 또는 전자문건을 가리킨다. 수입식품 판매기록은 수입식품의 수하인(이하 ‘수하인’으로 통칭)이 수입식품을 식품경영자 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것을 기재한 페이퍼 또는 전자문건을 가리킨다. **제4조** 수하인은 개선된 식품 수입기록 및 판매기록 제도를 구축하고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제5조** 수입식품 통관지역 출입국 검험검역기구는 수입식품의 수입기록과 판매기록의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 수하인은 특별히 식품수입에 관한 기록을 하고, 전문가를 파견하여 담당하도록 한다. **제7조** 수하인이 기록한 식품 수입기록은 아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수입식품의 명칭, 상표, 규격, 수량 및 중량, 화물운임, 생산배치번호, 생산일자, 품질보증기한, 원산지, 수출국가 또는 지역, 생산기업명칭 및 중국에서의 등록번호, 수출업체 또는 대리업체의 비안 일련번호, 명칭 및 연락처, 무역계약번호, 수입항구, 목적지, 필요에 따라 발급한 국(경)외 정부당국 또는 정부당국 수권기구가 발급한 유관 증명번호, 검역신고서번호, 입국시간, 보관장소, 연락인 및 전화 등의 내용. 기록양식은 첨부1을 참조한다. **제8조** 수하인은 다음과 같은 수입기록 문서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무역계약서, 선하증권(B/L), 필요에 따라 발급한 국(경)외 정부기관의 유관 증서, 검역신고서 사본, 출입국 검험검역기구가 발급한 《입국화물 검험검역증명》, 《위생증서》 등 문건 부본.**제9조** 수하인은 특별히 수입식품의 판매를 기록(식품수입 후 직접적으로 소매판매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해야 하고, 전문가를 파견하여 담당하도록 한다. **제10조** 식품수입 판매기록은 판매유통기록, 판매대상의 클레임 및 회수(리콜)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판매유통기록은 수입식품의 명칭, 규격, 수량 및 중량, 생산일자, 생산배치번호, 판매일자, 구매자(사용자)명칭 및 연락처, 출고번호, 송장추적번호, 식품회수 후 처리방식 등의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기록양식은 첨부2를 참조한다. 판매대상의 클레임 및 회수기록은 해당 수입식품의 명칭, 규격, 수량 및 중량, 생산일자, 생산배치번호, 회수 또는 판매대상이 클레임을 청구한 이유, 자체분석, 응급처리방식, 후속 개선조치 등의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기록양식은 첨부3을 참조한다. **제11조** 수하인은 다음과 같은 판매기록 문서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거래계약서, 매출전표기록, 출고전표 등 문서의 원본 또는 사본, 스스로 식품을 사용한 수하인은 가공사용기록 등의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제12조** 오염, 파손,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하인은 식품수입 및 판매기록을 적절하게보존해야 한다. 식품수입과 판매기록은 2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제13조** 수입식품 통관지역 출입국 검험검역기구는 수하인의 식품수입과 판매기록에 대하여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14조** 본 규정에서 말하는 수하인은 중국 대륙 경내(홍콩, 마카오 불포함)에서 외국과 무역계약을 체결한 실제 수하인을 가리킨다. **제15조** 본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1 : 식품 수입기록(생략) 2 : 수입식품판매기록(생략) 3 : 수입식품판매대상의 클레임 및 회수(리콜)기록(생략) |  |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关于发布《进口食品进出口商****备案管理规定》及《食品进口记录和销售记录管理规定》****的公告**2012年第55号 为进一步加强进口食品安全监管，根据《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及其实施条例、《国务院关于加强食品等产品安全监督管理的特别规定》和《进出口食品安全管理办法》等法律、行政法规、规章的规定，国家质检总局制定了《进口食品进出口商备案管理规定》和《食品进口记录和销售记录管理规定》，现予以批准发布，自2012年10月1日起施行。 附件：1. 《进口食品进出口商备案管理规定》 2. 《食品进口记录和销售记录管理规定》 二〇一二年四月五日附件1：**进口食品进出口商备案管理规定****第一章 总 则****第一条** 为掌握进口食品进出口商信息及进口食品来源和流向，保障进口食品可追溯性，有效处理进口食品安全事件，保障进口食品安全，根据《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国务院关于加强食品等产品安全监督管理的特别规定》和《进出口食品安全管理办法》等法律、行政法规、规章的规定，制定本规定。 **第二条** 本规定适用于向中国大陆境内（不包括香港、澳门）出口食品的境外出口商或者代理商，以及境内进口食品的收货人（以下统称进出口商）的备案管理。本规定附表所列经营食品种类之外的产品，如食品添加剂、食品相关产品、部分粮食品种、部分油籽类、水果、食用活动物等依照有关规定执行。**第三条** 国家质检总局主管进口食品进出口商备案的监督管理工作，建立进口食品进出口商备案管理系统（以下简称备案管理系统），负责公布和调整进口食品进出口商备案名单。国家质检总局设在各地的出入境检验检疫机构（以下简称检验检疫机构）负责进口食品收货人备案申请的受理、备案资料信息审核，以及在食品进口时对进出口商备案信息的核查等工作。 **第二章 出口商或者代理商备案****第四条** 向中国出口食品的出口商或者代理商，应当向国家质检总局申请备案，并对所提供备案信息的真实性负责。**第五条** 出口商或者代理商应当通过备案管理系统填写并提交备案申请表（附件1），提供出口商或者代理商名称、所在国家或者地区、地址、联系人姓名、电话、经营食品种类、填表人姓名、电话等信息，并承诺所提供信息真实有效。出口商或者代理商应当保证在发生紧急情况时可以通过备案信息与相关人员取得联系。出口商或者代理商提交备案信息后，获得备案管理系统生成的备案编号和查询编号，凭备案编号和查询编号查询备案进程或者修改备案信息。 **第六条** 出口商或者代理商地址、电话等发生变化时，应当及时通过备案管理系统进行修改。备案管理系统保存出口商或者代理商的所提交的信息以及信息修改情况。出口商或者代理商名称发生变化时，应当重新申请备案。**第七条** 国家质检总局对完整提供备案信息的出口商或者代理商予以备案。备案管理系统生成备案出口商或者代理商名单，并在国家质检总局网站公布。公布名单的信息包括：备案出口商或者代理商名称及所在国家或者地区。　　　 **第三章 进口食品收货人备案****第八条** 进口食品收货人（以下简称收货人），应当向其工商注册登记地检验检疫机构申请备案，并对所提供备案信息的真实性负责。**第九条** 收货人应当于食品进口前向所在地检验检疫机构申请备案。申请备案须提供以下材料：（一）填制准确完备的收货人备案申请表；（二）工商营业执照、组织机构代码证书、法定代表人身份证明、对外贸易经营者备案登记表等的复印件并交验正本；（三）企业质量安全管理制度；（四）与食品安全相关的组织机构设置、部门职能和岗位职责；（五）拟经营的食品种类、存放地点；（六）2年内曾从事食品进口、加工和销售的，应当提供相关说明（食品品种、数量）；（七）自理报检的，应当提供自理报检单位备案登记证明书复印件并交验正本。检验检疫机构核实企业提供的信息后，准予备案。**第十条** 收货人在提供上述纸质文件材料的同时，应当通过备案管理系统填写并提交备案申请表（附件2），提供收货人名称、地址、联系人姓名、电话、经营食品种类、填表人姓名、电话以及承诺书等信息。收货人应当保证在发生紧急情况时可以通过备案信息与相关人员取得联系。收货人提交备案信息后，获得备案管理系统生成的申请号和查询编号，凭申请号和查询编号查询备案进程或者修改备案信息。**第十一条** 收货人名称、地址、电话等发生变化时，应当及时通过备案管理系统提出修改申请，由检验检疫机构审核同意后，予以修改。备案管理系统保存收货人所提交的信息以及信息修改情况。**第十二条** 备案申请资料齐全的，检验检疫机构应当受理并在5个工作日内完成备案工作。**第十三条** 检验检疫机构对收货人的备案资料及电子信息核实后，发放备案编号。备案管理系统生成备案收货人名单，并在国家质检总局网站公布。公布名单的信息包括：备案收货人名称、所在地直属出入境检验检疫局名称等。 **第四章 监督管理****第十四条** 检验检疫部门对已获得备案的进口食品进出口商备案信息实施监督抽查。各地检验检疫机构通过对进口食品所载信息核查出口商或者代理商的备案信息，通过查验有关证明材料或者现场核查收货人所提供的备案信息。对备案信息不符合要求的，应当要求其更正、完善备案信息。不按要求及时更正、完善信息的，应当将有关信息录入进出口食品生产经营企业不良信誉记录。**第十五条** 进口食品的收货人或者其代理人在对进口食品进行报检时，应当在报检单中注明进口食品进出口商名称及备案编号。检验检疫机构应当核对备案编号和进口食品进出口商名称等信息与备案信息的一致性，对未备案或者与备案信息不一致的，告知其完成备案或者更正相关信息。**第十六条**（一）出口商或者代理商在申请备案时提供虚假备案资料和信息的，不予备案；已备案的，取消备案编号。出口商或者代理商向中国出口的食品存在疫情或者质量安全问题的，纳入信誉记录管理，并加强其进口食品检验检疫；对于其他违规行为，按照相关法律法规规定处理。（二）收货人在申请备案时提供虚假备案资料和信息的，不予备案；已备案的，取消备案编号。收货人转让、借用、篡改备案编号的，纳入信誉记录管理，并加强其进口食品检验检疫。**第五章 附 则****第十七条** 本规定自2012年10月1日起施行。附件1：出口商或者代理商备案申请表（略）2：收货人备案申请表（略）附件2：**食品进口记录和销售记录管理规定****第一条** 为掌握进口食品来源和流向，确保进口食品可追溯性，加强食品进口记录和销售记录的监督管理，依据《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及其实施条例、《国务院关于加强食品等产品安全监督管理的特别规定》、《进出口食品安全管理办法》等法律、行政法规、规章的要求，制定本规定。**第二条** 本规定适用于出入境检验检疫机构对食品进口记录和销售记录的监督管理。《进口食品进出口商备案管理规定》附件1所列经营食品种类之外的产品，如食品添加剂、食品相关产品、部分粮食品种、部分油籽类、水果、食用活动物等依照有关规定执行。**第三条** 食品进口记录是指记载食品及其相关进口信息的纸质或者电子文件。进口食品销售记录是指记载进口食品收货人（以下简称“收货人”）将进口食品提供给食品经营者或者消费者的纸质或者电子文件。**第四条** 收货人应当建立完善的食品进口记录和销售记录制度并严格执行。**第五条** 进口食品结关地出入境检验检疫机构负责进口食品的进口记录和销售记录的监督管理工作。**第六条** 收货人应当建立专门的食品进口记录，并指派专人负责。**第七条** 收货人建立的食品进口记录应当包括以下内容：进口食品的名称、品牌、规格、数重量、货值、生产批号、生产日期、保质期、原产地、输出国家或者地区、生产企业名称及在华注册号、出口商或者代理商备案编号、名称及联系方式、贸易合同号、进口口岸、目的地、根据需要出具的国（境）外官方或者官方授权机构出具的相关证书编号、报检单号、入境时间、存放地点、联系人及电话等内容。记录格式见附件1。**第八条** 收货人应当保存如下进口记录档案材料：贸易合同、提单、根据需要出具的国（境）外官方相关证书、报检单的复印件、出入境检验检疫机构出具的《入境货物检验检疫证明》、《卫生证书》等文件副本。**第九条** 收货人应当建立专门的进口食品销售记录（食品进口后直接用于零售的除外），指派专人负责。**第十条** 进口食品销售记录应当包括销售流向记录、销售对象投诉及召回记录等内容。销售流向记录应当包括进口食品名称、规格、数重量、生产日期、生产批号、销售日期、购货人（使用人）名称及联系方式、出库单号、发票流水编号、食品召回后处理方式等信息。记录格式见附件2。销售对象投诉及召回记录应当包括涉及的进口食品名称、规格、数重量、生产日期、生产批号，召回或者销售对象投诉原因，自查分析、应急处理方式，后续改进措施等信息。记录格式见附件3。**第十一条** 收货人应当保存如下销售记录档案材料：购销合同、销售发票留底联、出库单等文件原件或者复印件，自用食品的收货人还应当保存加工使用记录等资料。**第十二条** 收货人应当妥善保存食品进口和销售记录，防止污染、破损和遗失。食品进口和销售记录保存时间不得少于2年。**第十三条** 进口食品结关地出入境检验检疫机构应当对收货人的食品进口和销售记录进行检查。**第十四条** 本规定所称收货人指中国大陆境内（不包括香港、澳门）与外方签订贸易合同的实际收货人。**第十五条** 本规定自2012年10月1日起实行。 附件1：食品进口记录（略）2：进口食品销售记录（略）3：进口食品销售对象投诉及召回记录（略） |